

의안번호	2212232
의 퇴 인	전용기의원
회 답 일	2025. 9.19.
추 계 번호	25D44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	미확정 형사소송 판결서를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제1항) 열람·복사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서를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안 제59조의3제1항)
 - 개정안에 따라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서¹⁾를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확정판결 이전 단계의 판결서도 열람·복사 대상이 되므로 일시적으로 판결서 공개 건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판결서 비실명처리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1) 미확정판결이란 상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거나 상소심이 진행중인 판결을 의미하며, 1심 판결 직후 항소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항소심·상고심에서 계속 심리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함

- 다만, 미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는 향후 확정 판결²⁾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의 판결서를 현재 시점으로 앞당겨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연간 판결서 공개 건수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판결서 공개 건수 증가는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움
- 2020~2024년 연도별 공개 대상 형사 확정판결 건수는 다음과 같음

[표 1] 2020~2024년 연도별 공개 대상 형사 확정판결 건수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공개 대상 형사 확정판결 건수	230,164	219,128	213,289	219,181	222,706

자료: 대법원

- 또한 대법원은 2025년 기준 형사 및 민사 확정판결서 공개를 위한 연간 비실명처리 건수를 540,000건, 건당 단가를 7,112원으로 산정하여 비실명처리 소요 예산으로 38억 4,000만원을 편성함
-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를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안 제59조의3제2항)
- 현재 대법원은 공개 대상 판결서를 텍스트 형태의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신규 판결서 공개에 대하여는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이미지 형태의 파일로 작성된 과거 판결서를 검색이 가능한 텍스트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기 위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2) 확정판결이란 상소(항소, 상고) 제기 기간이 지나 상소가 불가능해지거나, 최종심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를 의미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1@assembly.go.kr